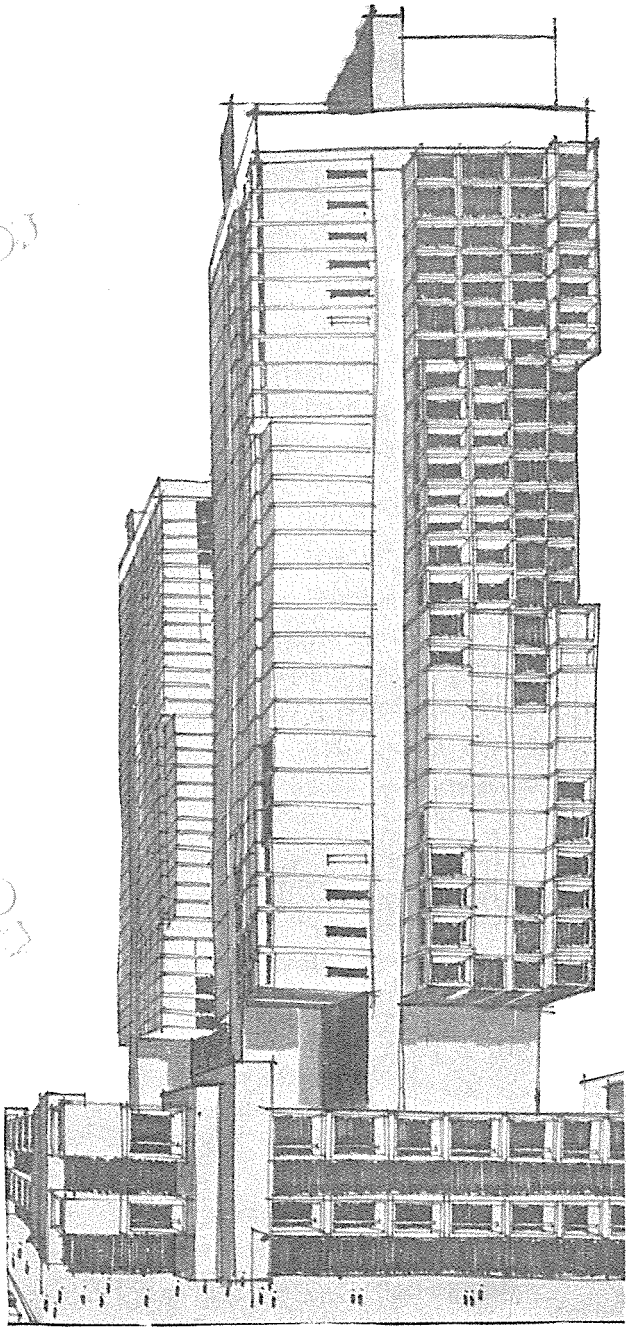


建築法解説



박우하 (건설부건축과장)

令第5條(建築物)

法第2條第2號의 建築物에는 地下나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 店舖, 興行場, 倉庫,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物을 包含한다.

建築物이라함은 法第2條第2號의 建築物과 여기에서 規定된 地下나 高架에 設置하는 事務所, 店舖, 興行場, 倉庫,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物을 包含한 것을 말한다.

法第3條(適用에서의 除外)

① 이 법의 規定은 文化財保護法에 依한 國寶文化財, 民俗資料, 史蹟, 名勝, 天然記念物 및 美術品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 한다.

② 第3章乃至 第5章의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都市計劃區域外에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 한다.

文化財保護法에 依한 國寶文化財, 民俗資料, 史蹟, 名勝, 天然記念物 및 美術品은 그存在의 特殊理由로 이법이 適用되지 아니 한다.

令第3條(都市計劃區域外의 準用)

法第3條第2項 및 第5條第4號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경우 또는 地域”이라 함은 都市計劃區域이 아닌 市 또는 郡의 區域과 道路法의 規定에 依한 1級國道 및 2級國道の 中心線으로부터 兩側 500미터의 區域을 말한다.

都市計劃法이 適用되지 않은 市 또는 郡의 區域과 道路法의 規定에 依한 1級國道 및 2級國道の 中心線으로부터 兩側 500미터안의 區域에 있어서는 이법의 準用을 받는 것이다.

法第4條(職權의 委任)

① 建設部長官은 本法의 規定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과 區가 設置된 市의 市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法의 規定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區庁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設部長官의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는 規定은 大統領令에 規定된 바 없다.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區가 設置된 市의 市長, (大邱市, 仁川市等)은 權限의 一部를 卽 建築法第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權을 區庁長에게 委任할 수 있는 것이다.

令第4條(職權의 委任)

① 法第5條에 關한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및 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의 權限은 그 一部를 區庁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만, 特殊建築物 및 特殊建築物 이외의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300平方미터 이상이거나 4層이상인 建築物과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기타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區域의 建築物을 제외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 및 市長이 그 權限의 一部를 委任하였을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및 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長은 法第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權의 一部를 區庁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法第2條 第3號의 規定에 依한 特殊建築物로서 學校, 病院, 劇場, 觀覽場, 百貨店, 舞蹈場, 公衆의 用에 供하는 浴湯, 市長, 旅館, 共同住宅, 寄宿舍, 工場, 倉庫, 貯藏庫, 車庫, 火葬場, 屠殺場等과 特殊建築物이외의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300平方미터 이상이거나 4層이상인 建築物과 서울市長, 釜山市長 기타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區域안의 建築物은 區庁長에게 建築許可權을 委任할 수 없는 것이다.

法第5條(建築許可)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 郡守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1. 特殊建築物用에 供하는 延面積 百平方 米以上의 것.
2. 延面積이 3百平方미터 以上이거나 3層以上인 木造의 建築物
3. 延面積이 2百平方미터 以上이거나 2層以上인 木造以外의 建築物
4. 기타 都市計劃 區域內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

建築物을 新築, 增築, 改築, 再築, 移轉, 大修繕, 重要變更, 用途變更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 郡守의 建築許可를 받아야만 한다. 建築許可의 對象區域은 適用對象區域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令第7條(許可申請書等)

法第5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請書에 關係書類를 添付하여 이를 市長(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郡守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則第1條(許可申請書의 書式)

① 建築物施行令(以下“令”이라 한다.)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別紙第1號書式 建築許可申請書의 正本 및 副本에 다음 圖冊을 添付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建築法(이하 “法”이라 한다)第5條第1號 및 第4號의 建築物에 있어서는(다欄)에 掲記하는 圖冊을 添付하지 아니한다.

圖冊의 種類		表示하여야 할 事項
(가)	附近案内圖	方位, 道路 및 目標가 되는 地物.
	配置圖	縮尺, 方位, 地地의 境界線 地地內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位置, 申請에 關係되는 建築物과 다른 建築物과의 區別, 擁壁, 우물 및 汚物 淨化構의 位置, 地地가 接하는 道路의 位置 및 幅員.
	各層平面圖	縮尺, 方位, 간살잡기 各室의 用途, 壁 및 가새의 位置 및 種類, 통채기둥, 開口部와 防火門의 位置 및 延燒

		의 憂慮가 있는 部分의 外壁의 構造
(나)	汚物 淨化槽의 構造圖	汚物 淨化槽의 모양, 構造 및 크기.
	2面 以上의 立面圖	縮尺, 開口部의 位置 및 延燒의 憂慮가 있는 部分의 外壁과 처마안의 構造.
	2面 以上의 断面圖 (法第5條第4号는 除外)	縮尺, 바닥의 높이, 各層의 天井의 높이, 처마 및 차양의 기장 처마높이와 建築物의 높이
(다)	基礎伏圖 各層바닥伏圖 지붕틀伏圖	縮尺 및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材料의 種別 및 寸數
	構造計算書	建築物의 概要, 構造計劃, 應力算定 및 断面算定

② 前項의 圖書에 表示되어야 할 事項을 다른 圖書에 表示하고 이를 前項의 申請書에 添附하였을 때는 그 表示를 省略할 수 있다.

③ 市長, 郡守는 申請에 關係되는 建築物이 法第26條第2項, 第27條第2項,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大統領令 또는 條例와의 關係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기타의 書類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則第2條(許可通知書의 書式)

① 令第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通知書는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申請書의 副本의 許可通知欄에 店要事項을 記載한 것으로 한다.

② 令第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不許可處분에 關한 通知書는 別紙第2号書式에 依한다.

則第2條의 2(許可通知書의 書式)

令第13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消防署長에 對한 許可事項의 通報는 別紙第9号書式에 依하되 附近案内圖를 添附하여야 한다.

則第3條(擁壁 및 工作物 등의 築造許可申請 및 許可通知書의 書式)

① 令第129條 各号에 掲記한 工作物(이하 工作物이라 한다)의 築造에 關한 許可申請은 別紙第3号書式에 依하되 다음에 掲記하는 圖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圖書의 種類	表示하여야 할 事項
附近案内圖	方位, 道路 및 目標가 되는 것
配置圖	縮尺, 方位, 垜地 境界線과 申請하는 工作物 등의 位置.
平面圖 및 橫断面圖	縮尺, 主要部分의 材料의 種別 및 寸數
側面圖 및 縱断面圖	縮尺, 工作物 등의 높이, 主要部分의 材料의 種別 및 寸數
構造詳細圖	縮尺, 主要部分의 材料의 種別 및 寸數

② 第1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와 當該 建築物에 부수하는 工作物 등의 築造許可를 同時에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條第1項의 許可申請書에 前項의 添附圖書(附近案内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하여야 할 事項을 第1條第1項의 附近案内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한 때에는 附近案内圖 또는 配置圖를 除外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則第4條(工事竣工申告書 및 檢査畢證의 書式)

法第7條第1項 및 令第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工事竣工申告書는 別紙第4号書式, 法第7條第2項 및 第3項과 令第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畢證은 別紙第5号書式에 依한다.

則第5條(着工申告書의 書式)

法第7節第1項 및 令第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工事의 着手申告書는 別紙第6号書式에 依한다.

則第6條(身分證明書의 書式)

法第4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證票는 別紙第7号書式에 依한다.

則第7條(標識의 書式)

法第50條의 規定에 依한 標識은 別紙第8号書式에 依한다.

令第8條(許可通知書의 交付等)

① 市長, 郡守가 法第5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하였을 때에는 申請者에게 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通知書의 書式은 建設部令으로 定한다. 法第7條의 規定에 依한 申請書, 檢査畢證 기타에 關한 書式 또한 같다.

[별지제 1호 서식]

[]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 군수 귀하									
1.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주소		전화		번			
2. 대리인의 주소 성명		주소		전화		번			
3. 설계자의 자격, 주소 성명, 사무소 명		() 급 건축사 등록 제 호		전화		번		(인)	
4. 공사감리자의 자격, 주소, 성명, 사무소 명		() 급 건축사 등록 제 호		전화		번		(인)	
5. 공사 시공자의 주소, 성명.		건설업 (면허) 제 호		전화		번		(인)	
6. 대지의 위치	가. 지 명, 지 번		주거전용, 주거, 상업, 준공업, 공업전용, 녹지, 미정지						
	나. 용 도 지 역		주거전용, 주거, 상업, 준공업, 공업전용, 녹지, 미정지						
	다. 방 화 지 구		방화, 준방화 미정지		기타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				
7. 주 요 용 도				8. 공 사 종 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주요변경			
		신 청 부 분		신청이외의 부분		합 계		※11.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9. 대 지 면 적									
10. 건 축 면 적								13. 주차장의 위치, 면적	
12. 연 면 적									
14.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15.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16. 기타 필요한 사항									
17.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제 호)	가. 용 도				라. 지붕이용재				
	나. 공사종별				마. 외벽				
	다. 구조				바. 처마안				
		구분		종별		총		총	
		사, 바닥면적		신청구분					
				신청이외의 부분					
				합계					
		아. 기둥 치수							
		자. 횡가재간의 거리							
		차. 층 높 이							
		가. 거실 천장 높이							

타. 최고 높이							
파. 최고 처마 높이							
하. 1층 거실바닥높이							
거. 변소의 종류	수세식, 제거식						
너. 건축설비의 종류							
※수 부 란	※결 재 란			※허 가 란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제 호	
계원인						계원인	
주의 : 기입하기 전에 부분란의 주의사항을 잘 읽어 주시오.							

[별지제 1호 서식]

<div style="text-align: center;"> 건축허가 통지서 </div>									
※허가통지서	이 신청서 및 첨부 도서에 기재한 건축물의 계획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을 인정하고 허가 하였기에 통지함.						허가번호, 제 허가년월일 (시장군수명)	호 년 월 일 ④	
1. 건축주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전화	번
2. 대리인의 주소성명								전화	번
3. 설계자의 자격, 주소성명 사무소명		()급 건축사 등록제 호				전화	번		
4. 공사감리자의 자격, 주소성명 사무소명		()급 건축사 등록제 호				전화	번		
5. 공사 시공자의 주소성명		건설업(면허) 제 호				전화	번		
6. 대지의 위치	가. 지명지번								
	나. 용도지역	주거전용, 주거, 상업, 준공업, 공업전용, 녹지, 미지정							
	다. 방화지구	방화, 준방화, 미지정	기타의 지역 지구또는 구역						
7. 주 요 능 도				8. 공사종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주요변경				
		신청구분	신청이외의 부분	합 계	※ 11.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9. 대지면적							
		10. 건축면적							
13. 연면적					12. 주차장의 위치, 면적				
14. 착공예정일		19 . .		15. 준공예정일	19 . .				
16. 기타 필요한 사항									
17.	가. 용 도			라. 지붕이용재					
	나. 공 사 종 별			마.					
	다. 구 조			바. 처 마 안					

신청건축물동별개요 (제 호)

구분		층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합 계
사 바 닥 면 적	신 청 부 분									
	신청이외의 부분									
	합 계									
아. 기둥 치수										
자. 횡자재의 거리										
차. 층 높 이										
마. 거실 천정 높이										
타. 최고 높이										
파. 최고처마높이										
하. 1층거실 바닥 높이										
거. 변소의 종류			수세식, 제거식							
너. 건축설비의 종류										

(주의)

① 신청 건축물이 2동 이상인 때는 신청 건축물 동별 개요를 (1동의 연면적이 10m²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마다 따로 작성 첨부 하시오.

- ② ※인 란은 신청자가 기입하지 마시오.
- ③ 3, 4 란은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거나 이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명칭을 기입하고 주소는 그사무소 소재지를 쓰시오.
- ④ 4, 5 란은 미정인 때에는 '건축착공 신청서' 제출 전에 정하여 신고 하시오.
- ⑤ 5 란은 도급공사인 때에만 기재 하시오.
- ⑥ 6의 나, 다란 8 란 및 17의 거란에는 해당하

는 곳에 ○표를 하고 17의 거란은 그 개요를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오.

- ⑦ 7 란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시오.
- ⑧ 17의 아, 자란은 목조인 때에만 기재 하시오.
- ⑨ 이밖에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16란에 기재 하시오.
- ⑩ 숫자는 상용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제 2 호 서식]

건축 불허가처분 통지서	
19	제 호
건축자 귀하	
(시장, 군수명)	
별첨 허가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계획은 하기 이유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설비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통지함.	
<u>이유</u>	
.....	

[별지 제 3 호 서식] (정본)

용벽및 공작물등 건축허가 신청서	
1. 축조주의 주소, 주민등록 및 성명	전화 번
2. 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 및 성명	전화 번
3. 설계자의 자격, 주소, 설계자의 성명, 사무소명	()급건축사 등록제 호 번 전화
4. 공사 시공자의 주소, 공사시공자의 성명	건설업(면허) 제 호 번 전화
5. 대지의 지명, 지번	
6. 착공 예정일	19
7. 준공 예정일	19
8. 비 고	

	가. 종류	
	나. 높이	
	다. 구조	
	라. 규모	
※ 결재란		※ 허가란
		19
		제 호
		제원인
<p>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성명</p> <p>시장 군수 귀하</p>		

[별지 제 3호서식] (부분)

응벽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통지서		
※ 허가통지서	이 신청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응벽 및 공작물등의 계획은 건축법 시행령및 조례의 규정에 석합함을 인정하고 허가하였기 통지함 허가 번호 제 호 허가 년월일 19 (시장, 군수명)	
1. 축조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전화 번	
2. 대리인의 주소 성명	전화 번	
3. 설계자의 자격, 성명 사무소명	()급건축사등록제 호 번 전화	
4. 시공자의 주소 성명	건설업면허제 호 번 전화	
5. 대지의 지명 지번		
6. 착공 예정일		
8. 비 고		
9. 응벽및 공작물 등의 개요	가. 종류	
	나. 높이	
	다. 구조	
	라. 규모	
참고사항		

[제 4호 서식]

공사준공 신고서		※수 부란
		제 호
		서기19
1. 공사준공연월일		
2. 허가번호		
3. 허가년월일		
4. 주요 용도		
5. 건축장소 또는 축조장소		
6. 공사시공자주소 성명	건설업(면허) 제 호	
7. 공사감리자주소 성명	()급건축사등록제 호	
<p>건축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 합니다.</p> <p>주소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장 군수 귀하</p>		

[서식 제 5호]

검사필증	
19 제 호	
(시장 군수) 인	
<p>건축법 제 7조 제 2항(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기에 관계되는 공사는 검사의 결과 당해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을 증명함.</p>	
1. 허가 번호	
2. 허가 년월일	
3. 주요 용도	
4. 건축장소 또는 축조 장소	
5. 건축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6. 공사완료 검사 년 월일	
7. 검사원직위성명	
(주의) 본증은 허가 통지서와 함께 보존하여 두시오	

[서식 제 6 호]

건축착공 신고서															
(시장, 군수) 건축주 주소				19. 귀하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부경유기관 기재란									
								허가번호		제 호					
								허가년월일		19.					
1. 건축 장소															
2. 착공 예정일 19.															
3.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간 년 개월															
4. 공사종별			신축			증축			개축						
5. 주요															
6. 공사하는 건축	가. 용도		(1)			(2)			(3)			합 계			
	나. 구조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기타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기타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기타
	다. 연면적		m ²			m ²			m ²				m ²		
	라. 공사예정액		원			원			원				원		
	마. 용도내역마다의 바닥면적														
	바. 용도별 면적														
7. 포함하는 때는 우란을 기재하지요 본건축물이 주택 또는 주택을	가. 주택의 종류		①전용주택			②농어업용			③일반병용주택			④기타의 주택			
	나. 주택의 이용관계		①자택			②대가			③급여주택			④기타			
	다. 주택의 시설여부		① 시설 (주택의 신축 또는 전부 개축)												
	라. 호 수					호									
	마. 주택의 연면적					m ²						m ²			
	바. 거실의 연면적					m ²						m ²			
건축법 제 7 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주

1. ※인이 있는것은 기입하지 마시오.
2. 허가번호 허가 년월일은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한함.
3. 4, 6의 나, 7의가, 나, 다란은 해당 문자를 ○표로 둘러시오.
4. 5란은 1구(一構)의 총괄적 용도를 기입하시오.

5. 6란은 각 용도별마다 기입 하시오.
6. 6의 다, 마란은 m²나 또는 평의 어느 한쪽을 기입 하시오.
7. 7의 마란은 주택 또는 주택 부분만의 면적을 기입 하시오.
8. 7의 바란은 상기 거주에 사용되는 실로서 여관, 요리점, 하숙,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용의 실은 기입하지 마시오.

제 호 출 입 검 사 증	사 진
소 속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상기자는 건축법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 공사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자 19 지 19
시장	
군수	인

건축법에 의한 허가필	
허가년월일 및 번호	19 제 호
허 가 관 서	
건축주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설 계 자 성 명	
공사 시공자 성명	
공사현장관리자성명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법 제53조의 4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9 (시장 군수) 인				
소방서장 귀하				
1. 허가 년 월 일	년 월 일	2. 허가 번호	제 호	
3. 건축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구 동 로 가 번지 호			
4. 대지의 위치	가. 지명, 지번			
	나. 용도지역	주거전용, 주거, 상업, 준공업, 공업전용, 녹지, 미지정		
	다. 방화지구	방화, 준방화, 미지정	기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5. 주요용도		6. 공사종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주요변경	
7. 구 조		8. 준공예정년월일		
9. 도로관계				
	신청부분	신청이외의 부분	합 계	13.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10. 대지면적				
11. 건축면적				
12. 연 면 적				
14. 소방시설개요	가. 소방시설			
	나. 경보시설			
	다. 피난시설			
	라. 기타소방시설			
15. 기 타 사 항				

法第 6 條(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

① 建築士法 第 4 條 및 第 5 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士가 아니면 設計할 수 없는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各各

該當 建築士의 設計에 依하여야 한다.

② 建築主가 建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의 建築物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の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 變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該當建築士를 工事監理者로 定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은 建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의 新築을 하는 境遇에는 그 設計는 建築士法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에서 施行하는 建築士資格考試에 合格하고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1級建築士와 2級建築士가 아니면 設計할 수 없다.

令第10條(工事監理者를 두어야 할 建築物의 規模) 法第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工事監理者를 定하여야 할 建築物의 規模는 다음 各号와 같다. 다만, 市長, 郡守가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号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延面積을 150 平方미터 내지 300 平方미터 범위 안에서 定할 수 있다.

1. 延面積이 300 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
2.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처마 높이 9미터 이상의 建築物

建築士法第4條 및 第5條의 建築物를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工事を 하고자 할 때에는 延面積이 300 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과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처마 높이 9미터 이상의 建築物에 對하여는 義務의으로 該當建築士를 工事監理者로 定하여야 하며 다만, 市長, 郡守가 그 地方 實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号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延面積을 150 平方미터 내지 300 平方미터 범위 안에서 工事監理者를 두어야 할 限界를 定할 수 있다.

法第7條(建築物에 關한 檢査 및 使用承認)

- ① 建築主가 建築工事を 着手 또는 完了하였을 때에는 그 着手 또는 完了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市長, 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② 市長, 郡守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受理 하였을 때에는 受理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竣工檢査를 實施하고 檢査에 合格된 建築物에 對하여는 그 建築主에게 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 ③ 市長, 郡守는 建築主의 申請에 依하여 建築物中 竣工된 部分에 對하여 一部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 假使用의 承認을 할 수 있다.
- ④ 建築主는 第2項의 檢査畢證의 交付를 받은 後가 아니면 그 建築物를 使用하지 못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가 受理된 날로부터 7日을 經過하거나 市長, 郡守가 假使用의 承認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建築主는 建築物의 建縮工事を 着工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着工申告書를 管轄市長, 郡守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建築主는 建築工事を 完了(竣工) 하였을 때에는 完了日로부터 7日 以內에 竣工申告書를 管轄市長, 郡守에게 提出하여야 하고 市長, 郡守의 竣工 檢査를 받아야 한다. 市長, 郡守는 竣工申告를 受理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竣工檢査를 實施하고 檢査에 合格된 建築物에 對하여는 檢査畢證을 交付한다. 檢査畢證을 交付받지 않고는 當該 建築物를 使用하지 못한다. 단, 建築物中 竣工된 部分에 對하여 一部檢査畢證의 交付를 받아 假使用 할 수 있다.

法第8條(公用建築物에 對한 特例)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建築物를 建築하고 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管轄市長, 郡守와 協議하거나 承認을 받아야 한다.

令第9條(公用建築物에 對한 特例)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建築物를 建築하고 자 할 때에는 當該建築에 關하여 權限있는 行政機關의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者는 當該工事を 着手하기 前에 그 工事に 關한 設計圖書를 管轄市長, 郡守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計圖書를 送付받은 市長, 郡守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하고 그 結果를 前項의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法第7條의 規定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建築工事を 完了하였을 때에 이를 準用한다.

國家(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道, 市, 郡, 邑, 面等)에서 建築物를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建築에 關하여 權限있는 行政機關의長 또는 委任을 받은 者는 當該工事を 着手하기 前에 그 工事に 關한 設計圖書를 管轄市長, 郡守에게 送付하여야 하며, 設計圖書를 送付받은 市長, 郡守는 지체없이 都市計劃의 抵解與否, 또는 條例와 기타 關係法令等에 適法與否等을 審査하여 協議나 承認을 하여야 한다.

또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建築工事を 完了하였을 때에도, 完了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管轄市長, 郡守에게 工事竣工申告書를 提出하여 檢査畢證을 交付받아 그 建築物를 使用하여야 한다.